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8

발의연월일: 2020. 12. 03.

발 의 자:이 영·김용판·박완수

박 진 • 배준영 • 서범수

서일준 · 성일종 · 임이자

장제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주민등록증" 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주민등록 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신청·발급·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 증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비의 부담) ① (생 략)	제5조(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u>주민등</u>	②
<u>록증</u> 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	록증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모바일주민등록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	③
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	
과 <u>주민등록증</u> 의 재발급 등에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주민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록증
정한다.	
<u> <신 설></u>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
	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경구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확인할 필요가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유효기
	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
	록증의 신청·발급·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증(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모바일주민등록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